서울시립대학교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 1988. 8. 10 규정 제138호
1995. 9. 1 규정 제281호
1997. 2. 20 규정 제38호
1998. 10. 1 규정 제19호
2006. 5. 25 규정 제776호
2007. 7. 9 규정 제854호
2008. 5. 1 규정 제953호
2009. 7. 3 규정 제1027호
2012. 6. 4 규정 제1271호
2012. 7. 19 규정 제1297호
2016. 2. 29 규정 제1583호
2017. 9. 25 규정 제1711호
2018. 7. 26 규정 제1761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29>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조교라 함은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명된 자를 말한다.

제2조의2(조교의 소속과 정원) ① 조교는 대학의 학부·과, 대학원의 학과, 전문대학원, 자유융합대학 교양교육부의 교과영역 및 그 밖의 기관에 소속한다.<개정 2012. 6. 4, 2012.07.19, 2016. 2. 29>

② 각 기관에 배정될 조교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3조(임용자격) 조교는 아래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수의 강의 연구 보조능력과 학생지도의 소양과 인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1.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성적이 우수한 자
2. 삭제
3.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조의2(신규임용의 방법) 조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제3조의3(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3조의2에 의한 신규임용의 심사를 위하여 조교가 소속되는 기관에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학의 학부·과, 대학원의 학과, 전문대학원에 소속되는 조교의 신규임용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는 당해 학부·과, 학과, 전문대학원의 교수 회의로 하며, 당해 학부·과의 학부·과장, 당해 학과의 주임교수, 당해 전문대학원의 부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2. 6. 4, 2016. 2. 29>

③ 자유융합대학 교양교육부에 소속되는 조교의 신규임용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는 교양교과영역별 주임교수 및 교양교육부장으로 하며, 교양교육부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2. 6. 4, 2012. 07. 19, 2016. 2. 29>

④ 그 밖의 기관 및 자유전공학부에 소속되는 조교의 신규임용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6. 4>

제4조(임용) ① 대학의 학부·과에 소속되는 조교는 당해 학부·과가 소속하는 대학의 장, 대학원의 학과에 소속되는 조교는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에 소속되는 조교는 전문대학원장, 자유융합대학 교양교육부에 소속되는 조교는 자유융합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2. 6. 4, 2016. 2. 29>

② 그 밖의 기관에 소속되는 조교의 임용을 위한 추천자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복무) ① 조교의 복무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② 조교는 재직 중에 주간에 운영하는 석·박사학위과정에 재학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2006. 5. 25>

제6조(임용기간)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학

기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임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 5. 25>

제7조(재임용) 조교는 2회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종합평가 등을 통하여 재임용 횟수를 2회 추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 <개정 2012. 6. 4><개정 2018.7.26>

제8조(보수) 조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 5. 1>

제9조(면직) 삭제

제10조(정원) 삭제 <개정 2006. 5. 25>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8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25)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서울시립대학교 조교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 전에 임용된 자는 기존 재임용 횟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재임용가능횟수를 조정한다.

기존 재임용 횟수	재임용 가능 횟수
0	4
1	3
2	2
3	2
4	2
5	1
6	0

[별표 1]<개정 2012. 6. 4, 2012. 7. 19, 2016. 2. 29, 2017. 9. 25>

소속 기관별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용추천자

조교가 소속되는 기 관	심사위원회의 소 속	위원장	위 원	임용추천자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장	교무부처장	자유융합대학장
고시반	학생과	학생부처장	고시반 주임교수	학생처장
대학언론사	대학언론사	대학언론사주간	교무부처장	대학언론사주간
체육관	체육관	체육관장	교무부처장	체육관장
교수학습개발 센 터	교수학습개발 센 터	교수학습개발 센터장	교무부처장	교육혁신본부장
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장	학생부처장	학생처장
대학본부	대학본부	해당처장	해당부처장	해당처장